



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392
결재일자	2015.1.9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식품위생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
전경재	정창훈	정주섭	전결 01/09 김경희	
협 조	보건행정팀장	代이석민		
	공중위생팀장	진철용		

‘15년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 계획



성 동 구
(보건위생과)

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 계획

관내 식품접객업소의 개인위생, 위생관리, 원산지표시,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지도·점검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,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I 주요 현황

추진근거

- 식품위생법 제2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(출입, 검사, 수거 등)
- 농·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
“2014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계획”-서울시식품안전과-5780호(2014.02.25)

2014 추진실적

- 합동점검반 편성: 1개반 5명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) 4개조로 편성.
- 정기적 지도점검: 주2회[월(화),목요일] 20:00~24:00, 연105회 실시.
-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

점검 업소수	위 반 건 수	위 반 내 용							
		건강진단 미필	무단 폐업	청소년 관련	시설 기준	준수 사항	위생적 취급	무신고	기타 (원산지)
1,287	198	21	75	18	52	8	4	11	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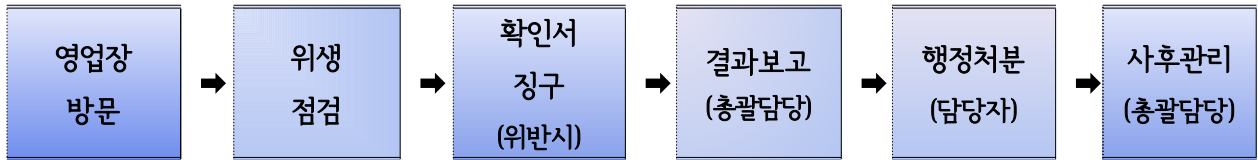
II 추진 방향

- 상설 야간단속반 편성 운영
- 시민단체(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)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
-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병행

■ 음식점 금연 지도 점검 병행

■ 점검요원 사전교육 및 청렴서약 실시

【 지도점검 흐름도 】



※ 서울시 자치구 간 교차 점검 실시 : 식품위생팀(운전원 포함)

Ⅲ 세부추진계획

■ 사업개요

- 추진기간: 2015. 1. 2 ~ 12. 31까지
- 추진목표: 100회(주/2회), 20:00 ~ 24:00.
- 대상업소: 3,940개소

(2015. 1. 5현재)

계	유흥주점	단란주점	일반음식점	휴게음식점	집단(위탁)급식소	제과점
3,940	24	53	2,918	569	290(95)	86

- 장비현황: 승합차 1대, 승용차 1대, 태블릿PC 9대 등

■ 상설점검반 편성

- 상설점검반 : 1개반 5명 순번제(반장, 직원 2, 감시원 2명)

반 장	①보건위생과장 ②식품위생팀장 ③공중위생팀장 ④보건행정팀장			
	1 조	2 조	3 조	4 조
조 장	전경재	최병희	박송화	김정열
조 원	황민정	이규욱	김영식	김상수
운 전 원	김봉태, 이병희			
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	김종구,정창숙,허병렬,박현숙,진철호,김지현,육자균,유병재			

※ 간담회(분기 1회) 및 감시원 사전교육 실시.

■ 점검 방법

● 동 담당별 위생점검 실시

전경재(6개동)	행당동, 사근동, 마장동, 금호동, 옥수동, 응봉동
최병희(4개동)	홍익동, 왕십리도선동, 왕십리2동, 용답동
박송화(3개동)	성수2가1동,성수2가3동,송정동.
김정열(2개동)	성수1가1동,성수1가2동.

● 지참물: 신분증(식품위생감시원증),점검표,확인서,카메라,기타 점검에 필요한 물품

■ 중점 지도점검 대상 및 내용

● 단속대상: 단란주점,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등

- 주류전문판매 업체(호프, 정종 등 주류전문 판매업소)는 전 업소
- 식사전문 판매업소(한식, 중식, 일식 등)는 33㎡ 이상 업소를 우선 실시
- 그 외 업소 민원발생시 점검 실시: 식품접객업소, 유통식품, 원산지표시 각 담당자

※ 명절 등 성수철 특별지도·점검 시 식품위생팀 협조

● 점검내용: “점검표” 참조

- 식품접객업소의 퇴폐·변태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
- 청소년 유흥접객부 고용, 청소년 출입·주류제공 등 위법행위 여부
- 무(신고)허가 또는 영업정지 업소의 불법영업 여부
- 상습적(연 5회 이상)인 위반업소, 음식물 재사용 비위생적 업소, 시민 신고업소
-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위반사항

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

■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

-축산물(5품목)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염소 포함

-농산물(2품목): 쌀, 배추김치(배추,고춧가루)

-수산물 (9품목): 광어(납치), 우럭(조피볼락)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(민물장어), 낙지, 명태 (황태,복어 등 건조한 것 제외, 고등어, 갈치) ※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 등

◆ 중점 점검사항

- 원산지 표시 및 증명서(거래명세서 등 각종 영수증) 보관상태.
- 원산지표시 방법 적절한지 여부(혼동 표시 등)
- 한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및 점검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에 기여.

■ 식품접객업소(원산지 표시) 위반업소 관리 및 처리

- 야간단속반: 확인서 징구, 증거물(사진 등) 확보
- 처분담당자: 행정처분, 행정심판, 소송 등
- 총괄담당자: 식품접객업소(원산지표시) 단속실적 관리 및 영업정지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

■ 주간 지도점검 강화

- 대상: 유흥, 단란, 주류전문판매업소를 제외한 일반, 휴게음식점 등
- 방법: 계절별 기획점검 ,자치구 권역별 교차 위생점검 등 추진 철저.

■ 음식점 금연 홍보 및 지도점검 병행.

● 중점 홍보사항

- 2015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포함
- 홍보 및 밀폐 차단된 ‘흡연석’ 운영업소 ‘14년말 종료 안내

● 중점 지도점검 사항

-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
-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, 설치기준 준수 여부
-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

-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
-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
-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
-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,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
-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
- 특히,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

IV | 소 요 예 산

- 총액: 10,000천원 (구예산: 2,000천원, 區식품진흥기금: 8,000천원)
 - 시책업무추진비: 2,000천원 (200,000원×10월)
 - 항목: 식품위생안전관리,식품접객업소(원산지표시)점검,시책추진업무추진비
 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(區식품진흥기금): 8,000천원(40,000원×2명×100일)
 - 항목: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,식품진흥기금,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,기타보상금
 - 1일 지급금액 40천원 근거: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제7조(식품의약품안전처)

V | 행 정 사 항

- 합동지도점검 근무자 근무방법 → 보건행정팀
 - 구 자체점검, 市 구간 교차점검 등 차출근무를 감안하여 13시간 근무 제외 및 단속차량과 운전원 지원
 - 상설점검반장(팀장): 야간근무로 월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10시간 추가 인정.

붙 임: 1.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복명서
 2. 원산지표시 점검표 각 1부 끝.